

# 2004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변경되는 주요 이슈

### 1. 경제일반

-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
- (2)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을 확대
- (3) 기금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관리를 강화
- (4)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를 강화
- (5) 회계제도를 선진화
- (6) 「소비자 안전센터」를 설치·운영
- (7) 여성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을 촉진

### 2. 경쟁촉진

- (8) 선진국형 지주회사제도를 도입
- (9) 기업결합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10)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를 개선
- (1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차단을 강화
- (12) 공정거래 사건 처리에 있어 서비스의 질을 제고
- (13)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활성화

### 3. 세 제

- (14)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
- (15)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
- (16) 세제관련 기타 주요 개정사항

### 4. 과학기술·산업·에너지

- (17)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제도를 개선

- (18)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확충

- (19) 분산형전원 활성화를 위한 구역전기사업제도를 신설
- (20)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
- (21) 중소기업의 해외 규격인증 획득에 대한 지원을 강화
- (22) 특허수수료 체계가 쉽고 간단하게 개편

### 7. 의료·복지

- (23)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을 확대

### 8. 환 경

- (24)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 (25)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시행
- (26)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 (27) 먹는 물 관리를 강화
- (28) 폐기물 재활용제도를 강화

### 9. 근로여건

- (29) 지속성장과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 (30)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제도를 신설 시행
- (31)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를 신설
- (32) 주5일 근무제 도입
- (33)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편
- (34) 작업환경 측정 대상과 횟수제도 개정

## 1. 경제일반

###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

기획예산처 사회재정1과 (3480-7736)

- 지역사업 예산이 지역 의사를 존중하여 지원되도록 재정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 각 부처가 다수의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를 통해 개별·분산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 지원
  - \* '05년 예산을 편성하는 '04년부터 적용
- 지역혁신발전계획 등 지역 스스로 만드는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토대로 전략적·체계적인 재원배분 유도
  - \* '04년 상반기중 각 부처의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자체의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기초로 5년 단위의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의 특성·우선순위를 중점 반영한 지역발전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 '05년부터 매년 5조원 이상의 재원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 균형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세, 과밀부담금,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입금 등의 세입 재원을 확보
- 지방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거나 기본인프라를 확충·개선하기 위한 재정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 \*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사업을 '지역혁신사업계정'과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 구분 운용
  - \* 현재 재정법률안 국회계류중 → 통과시 2005.1.1부터 시행

### (2)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을 확대

기획예산처 재정분석과 (3496-5047)

- 재정 성과관리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 22개 선시행부처의 재정사업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개발범위를 '03년 재정사업의 30% 수준에서 '04년말까지는 모든 재정사업으로 확대
- 나머지 행정부처는 '03년도에 재정사업의 30% 수준에 해당하는 사업의 성과목표·성과지표 개발 착수
- 22개 부처의 성과계획서가 처음으로 작성됩니다.
- 성과계획서에는 재정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목표치를 예산과 함께 제시
- 국가정책의 고객인 국민들의 관점에서 국가예산의 책정과 집행을 평가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로 발전

### (3) 기금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관리를 강화

기획예산처 기금제도과 (3480-7971)

-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 신설의 타당성에 대해 기금정책심의회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매 3년마다 기금존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기금존치 여부에 대한 첫번째 평가는 '04년에 실시
- 금융성 기금도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 금융성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 마련 저축장려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출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 4개 기금을 정비하였습니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예금보험기금은 기금관리 기본법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자금으로 전환
- '03년부터 일반회계로 사업을 이관한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과 '01년 8월부터 사실상 운용이 중단된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을 폐지

※ 현재 개정법률안 국회계류중 → 통과시 2004.1.1부터 시행

#### (4)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를 강화

기획예산처 기금제도과 (3480-7971)

■ 정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부과기준이 불명확한 8개 부담금을 정비하였습니다.

-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등 7개 부담금을 폐지

\*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소하천수익자부담금, 수자원원인자부담금, 보안림수익자부담금, 병해충구제예방비용부담금, 전기사업자부담금

-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운용하는 산업단지 공동부담금은 부담금관리 대상에서 제외

■ 성격상 부담금에 부합함에도 부담금관리대상에 누락되어 왔던 6개 부담금을 새로 부담금관리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추후 효율을 인상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할 경우 부담금운용심의 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

\* 기반시설부담금,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산지복구하자보수보증금, 사방사업 원인자부담금, 사방사업 이용자부담금,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 현재 개정법률안 국회계류중 → 통과시 2004.1.1부터 시행

#### (5) 회계제도를 선진화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503-9263)

■ 2004년 4월 1일부터 기업의 회계와 경영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과 시장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 공시서류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인증을 통해 공시서류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
- 거래소·코스닥 기업의 경우 임원, 주요 주주 등에 대해 금전대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
- 거래소·코스닥 기업의 경우 회계법인의 주기적(6년)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회계투명성이 담보된 경우는 예외\*를 인정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모회사와의 관계상 연속감사가 불가피한 경우 해외 적격거래소에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 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의 수를 1/2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강화

■ 2003년 12월 11일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수습제도를 개선하여 실무수습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다만, 외부법에 의한 외부감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외부감사 경력을 갖추어야 함

■ 거래소·코스닥 기업의 경우 2004년 4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분기별 배당제(현행은 결산과 반기 배당만 가능)가 도입됩니다.

-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당 투자유인을 제공하여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기업도 배당을 활성화하여 주주중시 경영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

#### (6) 「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운영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503-9060)

- 2004년 1월 1일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 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소비자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와 경고활동이 강화됩니다.
- 소비자안전센터는 일상생활에서 소비·사용되는 물품이나 용역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위해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경고(소비자 안전 경보)하는 업무를 수행
- 동 센터는 위해정보 보고기관(57개 소방서·병원), 소비자안전넷(<http://safe.cpb.or.kr>), 무료전화(080-900-3500) 등을 통해 수집된 위해정보를 분석한 후 위해정보평가위원회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소비자안전 경보 발령여부 등을 결정
- 한편 동 센터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사진·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할 예정

- 이러한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위해 물품이나 용역으로 인한 안전사고 확산을 차단하는 등 소비생활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7) 여성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을 촉진

여성부 정책2담당관실 (3703-2542)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여 여성직업훈련의 질을 제고합니다.  
※2004년도 예산: 71억 3천만원(국회 심의중)
-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대출재원: 100억원)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3년 이내(종전 1년 이내)
  - 여성인력개발센터 수료자
- 여성가장창업자금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임차보증금) 대출(대출재원: 30억원)

## 2. 경쟁촉진

#### (8) 선진국형 지주회사제도를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 (503-9122)

-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 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이 100% 미만, 자회사지분율이 50%(상장회사는 30%) 이상이어야 함
- 현재 일부 설립·전환 유형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

는 유예기간을 모든 유형으로 확대

- \* 현행 현물출자,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 자회사의 주식가액 증가 등 주식취득, 주식교환·이전방식 등도 포함

- 지주회사가 더욱 투명하게 바뀝니다.
-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하여 지주회사의 소유구조를 단순·투명하게 하고,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
-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요건을 신설하여

자회사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

\* 신설 지분율 요건 : 비상장 손자회사 50% 이상, 상장 손자회사 30% 이상

※ 현재 개정법률안 국회계류중 → 통과시 2004.4.1일 시행

### (9) 기업결합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503-1934)

■ 기업결합 심사절차를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입니다.

●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일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

\* 구체적인 규모는 시행령 개정시 확정할 예정임

● 계열회사간에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에서 제외

■ 그러나, 기업결합의 실제적 심사는 더욱 강화됩니다.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가 주식취득에 의해 기업결합을 할 경우 현재에는 사후 신고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원칙적으로 기업결합 완료전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

● 1차 신고후 주식의 적극적 취득에 의해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신고하여야 함

\* 1차 신고시 의도적으로 2대주주가 되도록 지분을 조정·신고하여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한 후 지배지분을 취득하는 사례를 방지

● 독과점 형성의 우려가 있고 복잡한 기업결합전에 대하여는 최장 심사기한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 현재 개정법률안 국회계류중 → 통과시 2004.4.1일 시행

### (10)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를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1담당관실 (504-5142)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가 쉬워집니다.

● 그동안 공정거래법상의 재판상 주장 제한조항(제57조①)이 개인의 손해 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오해가 있어 이 규정을 삭제

●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손해액 입증에 곤란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어 법원이 관련증거와 변론취지 등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됨

\* 원고의 손해액 입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발생은 입증되었으나 정확한 금액산정이 어려울 경우 보다 용이하게 금액을 확정하는 효과

● 피고의 무과실 책임이 고의·과실의 추정으로 바뀜

\* (현행) 피고가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 → 피고가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 면제

※ 현재 개정법률안 국회계류중 → 통과시 2004.4.1일 시행

### (1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차단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과 (504-4163)

■ 공동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을 대폭 높였습니다.

● 종전 최고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상향 조정

■ 과징금 부과한도를 높여 담합을 더욱 철저히 억제합니다.

● 현행 과징금 부과한도(관련 매출액의 5%, 10억원)로는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업들을 억제하는 데 미흡하여 관련 매출액의 10% 또는 20억원으로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

■ 신고자와 조사협조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 조사대상자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도 시정조치와 과징금 감면대상에 포함

※ 현재 개정법률안 국회계류중 → 통과시 2004.4.1일 시행

### (12) 공정거래 사건 처리에 있어 서비스의 질을 제고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1담당관실 (504-5142)

- 신고사건 진행상황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합니다.
- 그동안 신고접수 사실과 중간회신 등을 우편으로 통지해 왔으나, 신고인들의 궁금증 해소에는 크게 미흡하여 이를 개선
- 앞으로 자기가 신고한 사건의 처리진행 상황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나의 사건검색')에

서 실시간으로 검색 가능

- 심판정 출석제도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였습니다.
- 당사자의 심판정 출석시간을 안전별로 시간대를 달리 편성(시차제)하여 예고된 시간에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
- 심의 속개제도를 도입하여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현행 '회 심리' 방식을 보완하여 심의기회가 추가로 주어지는 '심의속개제도'를 도입
- 쟁점이 많은 안전의 경우 피심인에게 충분한 방어기회를 주고, 위원회도 신중한 심의를 기하도록 하기 위함

## 3. 세 제

### (14)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2110-2317),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

-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율 27%는 25%로, 1억원 이하분은 15%에서 13%로 각각 인하 하였습니다. 다만, 시행시기는 20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03.7.1.~'04.6.30. 기간동안 이루어진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업이 '03.7.1.~'04.6.30.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도록 기준 내용연수의 50%(현행 25%) 범위내에서 감가상각 기간을 가감하여 감가

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5)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503-9234)

- 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 '03년에 이어 '04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관세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무세화 품목(17개) : 철광석·나프타 등(기본세율: ~2%, 할당세율: 0%)
- \* 원유 : 할당세율 3%(나프타 제조용: 0%)
- 한·칠레 FTA협정 발효,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농축수산업 물품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였습니다.
- 농축수산업 지원 : 사료용 완두콩, 브라인 슈림프 알 등

- 중소기업 소요물품 : 주물용 코크스 등 4개 품목

### (16) 세제 관련 기타 주요 개정 사항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 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통해 세금 없이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
-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단 분식회계 후에 정정을 청구할 경우에는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 되었더라도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정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 기간중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함

■ 고속철도 운송요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됩니다.

- 2004년 4월부터 운행예정인 고속철도의 운송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 현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고속버스·항공기 등과의 형평을 감안

■ 중국 등과의 통상마찰요인을 제거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기 위해 조정관세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조정관세율도 인하하였습니다.

- 조정관세 제외품목(3개) : 견직물(조정 15% → 기본 13%), 면직물(조정 13% → 기본 10%), 견사(조정 10% → 기본 8%)
- 조정관세율 인하품목(7개) : 활동·활농어(55% → 50%), 냉동홍어·오징어(35% → 30%), 냉동낙지(30% → 25%), 표고버섯(55% → 50%),

## 4. 과학기술 · 산업 · 에너지

### (17)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제도를 개선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기획과 (504-6858)

- 과제선정에 있어 제도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 아지도록 하고, 과제관리시스템도 연구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고객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기획 정보를 사업공고 전에 공시
- 과제선정후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탈락자에게 평가의견을 통보
- 연구과제 관리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연구관리인증제 도를 도입
- 실효성 높은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함

니다.

- 평가결과 미흡한 연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
- 연구관리용어를 표준화하고 서식을 통합  
- 각 부처별로 서로 다른 용어와 서식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완화
- 각 부처의 연구사업 공고에 대한 정보를 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 사업 공고 포털 홈페이지를 구축

### (18)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확충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507-2152)

-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하여

도 입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입지혜택을 외국인을 위한 학교와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도 허용
-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매각, 임대료 감면, 임대기간 연장 등을 허용
- 신규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현금지원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설립형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현금지원이 가능토록 함
- 외국인투자 유치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

### (19) 분산형전원 활성화를 위한 구역전기사업제도를 신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 (2110-5513)

- 전기사업의 한 종류로서 구역 전기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 구역 전기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특정한 공급구역내의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 가능
- 구역 전기사업자는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 사업자와 보완공급약관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전력시장에서 거래 가능
- 일정한 집단 에너지 사업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공급구역 내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예정중인 사업자는 계속하여 전기의 직접적인 공급이 가능

### (20)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042-481-4512)

-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중소인력지원특별법」을 2004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활용여건을 개선
  - 교수나 연구원이 기업의 임직원을 겸임·겸직 할 수 있도록 특례인정하는 제도를 종전에는 벤처기업만 적용했으나, 이를 일반 중소기업(제조업)까지로 확대
  - 중소기업이 대학내 협력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로 특례인정
-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인력활용을 다양화
  - 중소제조업 장기근속자(10년이상)에게 주택을 공급할 경우 우선분양제도를 시행
  - 전역예정인 군 장기 복무자가 중소기업에 유급으로 현장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
- 특별법에 근거하여 인력지원시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청년인력을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과정을 거치도록 한 후 채용과 연계하는 '청년채용패키지사업'을 신규 추진
- 업종별·지역별 조합단위로 '인력구조 고도화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회원 중소기업에게 공동 채용활동, 주5일제 도입, 공동 교육훈련 등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할 계획

### (21) 중소기업의 해외 규격인증 획득에 대한 지원을 강화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042-481-4457)



-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규격 인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자원분야와 지원체제를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이 적기에 수출하고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인증품목을 확대 조정
  - 종전 1개 인증 → 1개 품목 2개 인증 또는 1개 인증 2개 품목
- 시험·검사비용, 인증수수료, 공장심사비용 등 규격 인증 획득비용의 50%까지 700만원 지원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 동 사업의 지원효율성을 제고하고 수혜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참여기업, 창업기업, 그리고 소규모 수출기업의 지원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신규참여기업과 창업 3년이내의 기업에 각각 평가점수 3점씩을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
- 수출주분과 수출실적의 가점부여조건을 종전의 5만불, 10만불에서 각각 3만불, 5만불로 하향
- 중소기업이 인증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이를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연 3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시기가 맞지 않아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수출업

체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개선

**(22) 특허수수료 체계가 쉽고 간단하게 개편**

특허청 기획예산담당관실 (042-481-5042)

-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 수수료 인상없이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와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
  -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수수료 등 수수료 분류 체계를 단순화
- 민원인들이 변리사 등의 도움없이도 쉽게 수수료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가산료 산정방식을 단순화하여 누구나 쉽게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상시화 (개인과 소기업 70%, 중기업 50% 감면)
- 국·공립대학이 소유한 특허권 등을 전담조직에 이전할 경우 이전등록료와 출원인 변경신청료를 면제함으로써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5. 의료·복지**

**(23)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을 확대**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503-7565)

-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3.5% 인상됩니다.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003년 10월 101만 9천원에서 105만 5천원으로 인상됩니다.
-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2003년 매

달 최대 89만 7천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금년에는 3.5% 늘어나 최대 92만 8천원을 생계비와 주거비로 지급

- 수급자간 급여의 격차를 완화하여 장애급여비 지원을 강화하고 고등학생 교과서 보조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한 장애급여비가 50% 인상됩니다. 2003년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과서 보조액이 100% 인상됩니다. 2003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 현금급여기준 :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구가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급여액

- 개별가구의 급여액은 현금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원)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현금급여기준(원)	324,186	536,905	738,476	928,901	1,056,160	1,191,780

## 6. 환경

### (24)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환경부 환경평가과 (2110-6716)

- 환경영향평가지 스코핑(Scoping)제도를 도입합니다.
- 그 동안에는 사업의 특성에 관계없이 일반항목(23개)과 중점평가항목 모두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 간략하게 평가가 가능한 항목이나 평가가 불필요한 항목까지 평가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중요도와 사업특성에 따라 필수적인 항목을 선정하여 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004.7)
- 아울러,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대행업자에게 맡길 경우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부실평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2004.7)

### (25)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시행

환경부 유역제도과 (2110-6841)

-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목표수질이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가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2004.8)

### (26)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환경부 교통공해과 (2110-6799)

- 천연가스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나 청소차를 제작할 경우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
  - CO : 4.0 → 0.4g/kwH



- HC : 0.9 → 0.2g/kwH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제작차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제작시 배출 허용기준을 신선했으므로써 건설장비의 배출가스도 규제

**(27) 먹는물 관리를 강화**

환경부 수도관리과 (2110-6880)

- 수도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먹는 물 수질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수도물의 과잉소독 방지를 위해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소독부산물질5개 항목에 대하여 규제기준을 강화 (2004.7)
- \* 적용대상을 10만톤 이상 정수장에서 전국의 모든 정수장으로 확대
- 병원성 미생물 관리강화를 위하여 탁도기준을 0.5NTU에서 0.3NTU로 강화하는 한편, 정수장의

개별여과지 탁도를 연속하여 측정하도록 의무화 (2004.7)

\* 시설용량이 1일 10만톤 이상인 정수장에 적용

**(28) 폐기물 재활용 제도를 강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2110-6954)

-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강화합니다.
- TV·냉장고·컴퓨터·타이어 등의 제품과 종이팩·금속캔·유리병 등에 대하여 생산자 책임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필름형 플라스틱 포장재와 형광등에까지 확대
-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분리배출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유예하였던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를 의무화

**7. 근로여건**

**(29) 지속성장과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2110-7080)

-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됩니다.
-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 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
-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

-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1월) 의무 등을 이행한 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망을 통해 외국인 구직자를 추천받고 이 중 필요한 적격자를 직접 선정 가능
- \*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인력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2004.1월)
- 정주화 방지를 위해 최대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1년마다 갱신)
- 만기보험을,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을 각각 가입

을 하여야 함

- 사업장의 휴·폐업, 사업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질병상해 발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금지

**(30)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신설 시행**

노동부 고용정책과 (507-1713)

■ 2004. 1. 1부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을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관리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요건

- 건설업 면허·허가·등록을 받은 사업주가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 월 1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 지원수준 :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월 20~3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
- 지원금 신청방법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3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를 신설**

노동부 고용지원과 (507-6267)

■ 주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요건

-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시기보다 6개월 이전에 조기도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금융·보험업·공공부문, 전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의 사업주가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함에 따라 근로자수가 근로시간 단축전보다 증가하는 경우

● 지원수준

-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 1인당 분기에 150만원을 지원 (단축전 근로자수의 10% 한도내)
-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32) 주5일 근무제 도입**

노동부 근로기준과 (507-1713)

■ 2004년 7월부터 공기업·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주5일 근무제가 가능합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 법정근로시간 단축(1주 44 → 40시간)
-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5일 ~ 25일)
- 생리휴가 무급화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1월 → 3월)
- 3년간 연장근로 한도 확대(1주 12시간 → 16시간) 및 최초 4시간분 할증률 인하(50% → 25%)
- 업종·규모별 단계적 시행('04. 7 → '11년)

■ 1,000인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도 노사합의로 노동부에 적용 특례신고를 할 경우 개정법을 조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3)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편**

노동부 고용정책과 (503-9748)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이 개편됩니다.(2004.1월)

- 「고령자 다수 고용촉진 장려금」은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율이 변경되며 5년간 지원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고령자를 상시근로자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분

기에 15만원 지원(다만, 5년간 지원)

- 지원대상 : 55세 이상 고령자 → 고용기간이 1년 이상  
인 55세 이상  
고령자
- 지원기준율 : 전업종 6% →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 서비스업 17%, 기타업종  
7%
- \* 업종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함
- 지원기간 : 무한정 → 5년
- 「고령자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인상
-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50세 이상의  
사람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1인  
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다만, 중소기업은 12  
개월간 지원)
- 지원대상 : 55세 이상의 사람을 자를 고용보험 피보험  
자로 채용 → 50세 이상의 사람을 고용보  
험 피보험자로 채용
- 지원수준 : 1인당 월 28만원씩 6개월간 지원 →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중소제조업 :  
12개월간 지원)
- 「고령자 재고용 장려금」을 폐지하고 「정년 퇴직자 계  
속고용 촉진 장려금」을 신설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촉진 장려금 : 정년을 57세 이상  
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

직이 도래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거  
나 정년퇴직 후 3개월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다만, 고용기간이 1  
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 제조업의 경우 12개  
월간 지원)

### (34) 작업환경 측정 대상과 횡수 제도 개정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507-0206)

-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의 범위와 유해인자가 확  
대되었습니다.
- 옥내뿐만 아니라 옥외 작업장도 측정대상에 포함
- 측정대상 유해인자가 191종으로 확대
- 기존 횡수조정제도가 폐지되고 작업환경측정 횡수  
가 측정결과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측정대상 작업장이나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측정하고 그 후 매 6개월  
마다 1회 이상 측정을 실시
- 작업공정 등에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1회 측정하는 것으로 완화
- 다만,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외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1회씩 측정하는 것으로 강화